

2025

8

Monthly Magazine

통 권 261호

월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세계경영저널

세무회계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2025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획재정부)

(+문답자료)



2025 - 8

세무회계경영

저널

2025

세계개편안

안안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정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 비상장·중소기업 주식 평가방법 2
- ✓ 자기조정신고와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조정신고의무 3
- ✓ 부모 사망 전 증여의 의미와 장·단점 4
- ✓ 개인·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표준세율 + 종과세율 5

이달의 세금신고 Checkpoint

- ✓ 12월 결산법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국세청) · 6

이달의 특집

-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획재정부) 10

8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1(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포
25(월)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환급(내국법인)	

-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7월)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평가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5/7/2일자 통권 1734호

개념구분	구체적 평가방법
일반적 평가원칙	① 순손익가치의 60%+순자산가치의 40% ② 단, 가중평균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함
부동산 등 보유비율 50% 이상 과다보유법인	순손익가치 40% + 순자산가치 60%
부동산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의무규정)
주식 등 보유비율 8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결손법인	손익가치의 60% + 자산가치의 40% 일반원칙 적용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폐업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의 사망 등 사업계속이 곤란한 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비중소기업 및 비중견기업은 평가액의 20% 할증평가함

◎ 자기조정신고와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조정신고의무

- 안세재경저널 2025/7/9일자 통권 1735호

개념, 구분, 정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규모기준 (직전연매출 등)	직전년 매출수입 70억원이상+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직전년 기준수입금액 이상 (농·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원,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1.5억원)
조세특례 직접 적용	직전매출수입 3억원 이상 + 조세특례 적용	조특법상의 세액공제, 감면 및 소득공제 적용 사업자
조세특례 간접 적용	직전매출수입 3억원 이상 + 준비금 3억원 이상	해당 없음
신규사업자	설립 2년 이내 + 당년도 수입 3억원 이상	직전년도 신규사업 개시자 (간이과세자는 제외)
불성실신고 (결정·경정)	직전년도 법인세 결정, 경정 받은 경우	직전년 소득세 추계결정·경정 받은 사업자
합병·분할· 분할합병 등	소급하여 3년 이내 합병 분할법인 등	해당없음
해외 연관성	국외사업장 소유 + 외국자회사 소유 등	해당없음
외부조정 불필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 부모 사망 전 증여의 의미와 장·단점

- 안세재경저널 2025/7/16일자 통권 1736호

개념구분	의미, 효과, 장점, 계산비교 등
10년 단위 구분	증여재산은 10년 단위 합산으로 구분하면, 10년마다 낮은 세율(10%~20%) 여러번 적용 사전증여 없으면 향후 사망시 일괄합산되어 높은 증여세율 적용
낮은 시가 적용	일찍 증여할 수록 물가상승 대비 낮은 평가액으로 계산되어 낮은세율 적용가능함
가족재산 순환	부모 재산이 일찍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사업자금과 주택취득 등 가능
이익금액 전달	일찍 증여된 자산의 이자·임대료 등의 향후 이익에는 증여세가 없음
수명연장 순환	한국인 평균 수명연장에 대응하여 선증여 통한 세대간 경제순환 촉진
향후 양도세 감소	선증여재산 양도시 증액된 증여가액이 취득원가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감소됨
창업자금증여	창업자금증여액(50억원 까지) - 5억원 차감 후 낮은세율 10%만 적용(조특법 제30조의5)
가업승계증여	가업주식 자산평가액 - 10억원 차감 후 낮은세율 10%만 적용(조특법 제30조의6)
생활력 영향	너무 일찍 증여하면 자녀의 독립생활 의지에 반대작용(나쁜 영향)
승계재산 훼손	자녀의 재산관리 능력 부재시 탕진 가능성 있음(60대에 증여)
상속재산 합산	창업자금증여와 가업승계증여재산은 최종상속재산에 합산과세

◎ 개인·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표준세율 + 종과세율

- 안세재경저널 2025/7/30일자 통권 1738호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 경우(교육세·농특세 등 추가)		최종취득세율	
		개인	법인
주택 취 득	1주택 취득(6억까지 1%, 6-9억 1~3%, 9억 초과 3% -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3%	12%
	2주택 취득(표준세율 4% + 종과기준세율 2배(4%) - 비조정지역은 3주택까지	8%	12%
	3주택 이상 취득 (법인 : 표준세율 4% + 종과기준세율 4배(8%) = 12% - 비조정지역은 4주택까지	12%	12%
	주택무상취득인 경우(3억 미만이면 3.5%)	12%	12%
비주택 일반 건물의 일반 취득(시행령 26 도시형 업종)		4%	4%
기 타 종 과 세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신증축·공장 신·증설 : 표준 4% + 종과 2배(4%)	-	8%
	대도시 내(수도권 위성도시 포함) 법인설립 지점설치, 공장 신증설(표준세율의 3배 - 종과세율의 2배)	-	8%
	도시형 업종은 종과세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의료업, 공공주택임대사업 등)	-	4%
	대도시 내 지점, 분사무소 설치 후 5년 내 취득등기(표준세율의 3배, 종과세율의 2배) 5년 후는 4%	-	8%
	대도시 밖에서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	4%
	대도시 밖 본점, 주사무소, 지점의 대도시내 전입(표준세율의 3배 ⊖ 종과세율의 2배)	-	8%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오락장 등 : 표준세율 4% + 종과세율 4배(8%)	12%	12%





12월 결산법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국세청

- (신고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도변경)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 그 외 법인은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②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2만 8천 개 법인으로 지난해 51만 7천 개 보다 1만 1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편의)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월 결산법인인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분할납부 기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11.3.까지)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10.1.까지)
-------------	--

* (예)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 9.1.까지 1,000만원 납부, 11.3.까지 700만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 9.1.까지 2,500만원 납부, 10.1.까지 2,500만원 납부

□ (세정지원)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중소기업과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4,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이 그 대상이며,
-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되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입니다.

*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 (중간예납 방식)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②상반기('25년 1월 ~ 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②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중간예납 방식(①·②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

$$\text{중간예납세액} = \left[\begin{array}{c} \text{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text{(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end{array} \right] \times 50\%$$

② 가결산 방식 : 상반기('25.1. ~ '25.6.)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text{중간예납세액} = \left[\begin{array}{c} \text{상반기 과세표준} \times 2 \\ \text{[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 \ominus \text{손금)} \\ \text{-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 \text{소득공제]} \end{array}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6/12 - \left[\begin{array}{c} \text{상반기} \\ \text{·공제·감면세액} \\ \text{·원천징수세액} \\ \text{·수시부과세액} \end{array} \right]$$

□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 일반 경로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2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폭우·산불 등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12월 결산법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②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③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주업종,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

구 분	선정기준	법인수
① 특별재난지역	·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4,135
	·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4,593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945
②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③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4,242
③ 석유화학·철강·건설	·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24,968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9월 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1일에서 11월 3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됨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 시기	'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1일	'25년 11월 3일 → '26년 1월 5일



2025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

2025년 세제개편안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세부기술 대상 확대 ○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 7개 신설, 2개 확대

<p>□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p> <p style="margin-left: 20px;">*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25%, 중견대 15%) 적용</p> <p style="margin-left: 20px;">○ 7개 분야 58개 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신설) 7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분야</th> <th>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 (5개)</td> <td>생성형 인공지능</td> </tr> <tr> <td>에이전트 인공지능</td> </tr> <tr> <td>학습 및 추론 고도화</td> </tr> <tr> <td>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td> </tr> <tr> <td></td> <td>인간 중심 인공지능</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미래형 운송·이동 (2개)</td> <td>인공지능형 자율운항</td> </tr> <tr> <td>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인공지능 (5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분야	세부기술											
인공지능 (5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p>□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p> <p style="margin-left: 20px;">○ 8개 분야* 61개 시설</p> <p style="margin-left: 40px;">* 인공지능 분야 추가</p> <p style="margin-left: 40px;">- 3개 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분야</th> <th>사업화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공지능 (1개)</td> <td>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미래형 운송·이동 (2개)</td> <td>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td> </tr> <tr> <td>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td> </tr> </tbody> </table>	분야	사업화시설	인공지능 (1개)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분야	사업화시설												
인공지능 (1개)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법 §89③, 관세령 §11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기간 *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20~100%) ○ 3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지정기간 연장 ○ 3년 → 10년

<개정이유> 관세 감면 적용 간소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8, 조특령 §22의12, 조특칙 §13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율) 10%(중소: 15%) ○ (적용기한) '28.12.31.
--	---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 공제율 - (기본공제율) 10% (중소: 15%, 대: 5%) - (추가공제율*) 10%(중소: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조정 - (기본공제율) 10%(중소: 15%)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 (공제율) 3%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기업 포함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104의30, 조특령 §104의27)

현 행	개 정 안
<p>□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❷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액의 3% <신 설> <p>○ (적용기한) '25.12.31.</p>	<p>□ 세액공제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운송비용 → 물동량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 - (공제율)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p>○ '28.12.31.</p>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 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p>□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 14개 분야* 273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p>□ 세부기술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분야 274개 기술

<p>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대 3%) 적용</p> <p>○ 14개 분야 186개 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1개 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분야</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방위 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td> </tr> </table> <p>□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p> <p>○ 14개 분야 187개 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 1개 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분야</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화시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방위 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설계·인증·평가 등 시설</td> </tr> </table>	분야	세부기술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분야	사업화시설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설계·인증·평가 등 시설
분야	세부기술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분야	사업화시설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설계·인증·평가 등 시설								

<개정이유> 방위산업의 R&D·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p>□ 통합고용세액공제</p> <p>○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p> <p>○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td> </tr> <tr> <td rowspan="2">구분</td> <td colspan="2">중소(3년)</td> <td rowspan="2">중견 (3년)</td> <td rowspan="2">대 (2년)</td> </tr> <tr> <td>수도권</td> <td>지방</td> </tr> <tr> <td>우대*</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r> <td>기본</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able> <p>*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p>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p>□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p> <p>○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p> <p>○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td> </tr> <tr> <td rowspan="2">구분</td> <td colspan="2">중소(3년)</td> <td rowspan="2">중견 (3년)</td> <td rowspan="2">대 (2년)</td> </tr> <tr> <td>수도권</td> <td>지방</td> </tr> <tr> <td rowspan="3">우 대*</td> <td>1년차</td> <td>700</td> <td>1,000</td> <td>500</td> <td>300</td> </tr> <tr> <td>2년차</td> <td>1,600</td> <td>1,900</td> <td>900</td> <td>500</td> </tr> <tr> <td>3년차</td> <td>1,700</td> <td>2,000</td> <td>900</td> <td>-</td> </tr> <tr> <td rowspan="3">기 본</td> <td>1년차</td> <td>400</td> <td>700</td> <td>300</td> <td rowspan="3">-</td> </tr> <tr> <td>2년차</td> <td>900</td> <td>1,200</td> <td>500</td> </tr> <tr> <td>3년차</td> <td>1,000</td> <td>1,300</td> <td>500</td> </tr> </table> <p>*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p>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 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 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 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 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 '28.12.31.
---	---

<개정이유>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 5명, (대기업) 10명 ○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 \frac{\text{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p>(정규직 근로자는 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는 0.75명)</p>	<input type="checkbox"/> 계산방식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 $* \sum \left[\begin{array}{l} 1\text{명} \\ 0.5\text{명} \\ 0.75\text{명}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근로 기간}}{\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p>(정규직 근로자는 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는 0.75명)</p>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 여부 판단 기준 ○ 해당 과세연도에 19~34세	<input type="checkbox"/>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34세

<개정이유> 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①&② ① 육아휴직자 복직 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적용횟수) 자녀 1인당 1회 ○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26.12.31.

<개정이유> 육아휴직 복귀 지원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 (완전복귀), 50%(부분복귀) ○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부분복귀 감면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	---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특령 §104의21⑥)

현 행	개 정 안
<p>□ 감면대상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귀 후 소득 × $\frac{\text{국외사업장 매출액}}{\text{국내매출액}}$ ○ 부분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귀 후 소득 × $\frac{\text{국외사업장 매출액}}{\text{국내매출액}}$ -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귀 후 소득 × $\frac{\text{국외사업장 축소 생산량}}{\text{확인한 생산량}}$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축소완료 이전에는 실제 축소량에 비례해 감면대상 소득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사업장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량}}{\text{국내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경우
	$\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text{국내매출액}}$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04의24④, 조특령 §104의21⑧)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해산한 경우:폐업·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감면세액 전액 ○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국외사업장 신·증설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input type="checkbox"/> 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8의3, 조특령 §35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①내국법인이 ②외국자회사 주식등을 ③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②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피출자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 ※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i)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
 - * (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 (ii)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처분
 - (iii)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충족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적용세율	14%	20%
			3억원 초과
			35%
	○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현 행	개 정 안																														
<p>□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방식) 미환류소득*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제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 70%*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 15%*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환류대상) 	<p>□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항목</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투자</td> <td>1</td> </tr> <tr> <td>입금증가(①+②+③)</td> <td></td> </tr> <tr> <td>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td> <td>1~2</td> </tr> <tr> <td>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상생협력 지출액</td> <td>3</td> </tr> </tbody> </table>	항목	가중치	투자	1	입금증가(①+②+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항목</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투자</td> <td>1</td> </tr> <tr> <td>입금증가(①+②+③)</td> <td></td> </tr> <tr> <td>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td> <td>1~2</td> </tr> <tr> <td>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상생협력 지출액</td> <td>3</td> </tr> <tr> <td>배당*</td> <td>1</td> </tr> </tbody> </table>	항목	가중치	투자	1	입금증가(①+②+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항목	가중치																														
투자	1																														
입금증가(①+②+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항목	가중치																														
투자	1																														
입금증가(①+②+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p>○ (적용기한) '25.12.31.</p>	<p>*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분기배당)</p> <p>○ '28.12.31.</p>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④·⑤·⑥)

현 행	개 정 안
<p>□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수수료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 소득 	<p>□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 (투자방법)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②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16)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용 기본재산대체취득시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 ○ (과세이연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li style="margin-left: 40px;"><추 가> <li style="margin-left: 40px;"><신 설> ○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li style="margin-left: 40px;"><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 ○ 유가증권 과세이연방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 (과세이연 요건)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 매각→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유가증권 대체취득 ○ (좌 등) ○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교자·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도·담보제공 금지 위반, 수익사업 수익의 학교경영 외 목적사용 등

<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① 직·간접*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세액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율) ① (좌 동) ②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 ○ '28.12.31.

<개정이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16·§11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 (회수단계) ①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벤처투자회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13의2)

현 행	개 정 안
<p>□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p>□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p>□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 '28.12.31. <p>□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④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51의2)

현 행	개 정 안
<p>□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추 가> ○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추 가> 	<p>□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 (좌 등)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대상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
(조특법 §117①·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거래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자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 	<p><input type="checkbox"/>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성장 지원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10만원 초과 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기부·공제한도) 2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20만원 초과 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좌 동)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 (내용)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 (적용기한) '26.12.31. 	<input type="checkbox"/>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이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 (좌 동)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좌 동)

<개정이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5년 100%	5년 100%	수도권	5년 100%	5년 100%
연접지역 ³⁾	+2년 50%	+2년 50%	연접지역	+3년 5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신 설> <신 설>			○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28.12.31.		
○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의10, 조특령 §97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회사 ○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연받은 세액 × 주식처분비율 (ii)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이연받은 세액 전액 (iii)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이연받은 세액 전액 및 이자상당액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특구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위기지역</td> <td>5년 100%+2년 50%</td> </tr> <tr> <td>농공단지</td> <td>5년 50%</td> </tr> <tr> <td>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td> <td></td> </tr> <tr> <td>연구개발특구</td> <td></td> </tr> <tr> <td>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td> <td></td> </tr> <tr> <td>제주투자진흥지구</td> <td></td> </tr> <tr> <td>기업도시개발구역</td> <td></td> </tr> <tr> <td>지역개발사업구역</td> <td>3년 100%+2년 50%</td> </tr> <tr> <td>여수해양박람회특구</td> <td>(사업시행자는</td> </tr> <tr> <td>새만금투자진흥지구</td> <td>3년 50%+2년 25%)</td> </tr> <tr> <td>평화경제특별구역</td> <td></td> </tr> <tr> <td>아시아문화중심도시</td> <td></td> </tr> <tr> <td>금융중심지</td> <td></td> </tr> <tr> <td>첨단의료복합단지</td> <td></td> </tr> <tr> <td>국가식품클러스터</td> <td></td> </tr> </tbody> </table>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3년 100%+2년 50%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3년 50%+2년 25%)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3년 100%+2년 50%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3년 50%+2년 25%)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적용기한) '25.12.31.	○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input type="checkbox"/>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r> <tr> <td>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td> <td>3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④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th> <th colspan="2">공제한도</th> </tr> <tr> <th>7천만원 이하자</th> <th>7천만원 초과자</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공제 한도</td> <td>300</td> <td>250</td> </tr> <tr> <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 <td rowspan="2">전통시장 대중교통</td> <td rowspan="2">300</td> <td rowspan="2">200</td> </tr> <tr> <td>도서공연등</td> <td>-</td> </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	200	도서공연등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th> <th colspan="2">공제한도</th> </tr> <tr> <th>7천만원 이하자</th> <th>7천만원 초과자</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공제 한도</td> <td>300</td> <td>250</td> </tr> <tr> <td rowspan="2">자녀 1명</td> <td rowspan="2">350</td> <td rowspan="2">275</td> </tr> <tr> <td>자녀 2명 이상</td> <td>400</td> <td>300</td> </tr> <tr> <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 <td rowspan="2">전통시장 대중교통</td> <td rowspan="2">300</td> <td rowspan="2">200</td> </tr> <tr> <td>도서공연등</td> <td>-</td> </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 1명	350	275	자녀 2명 이상	400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	200	도서공연등	-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	200																																				
				도서공연등	-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 1명	350	275																																					
			자녀 2명 이상	400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	200																																				
				도서공연등	-																																		
	○ (적용기한) '25.12.31.			○ '28.12.31.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❶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❷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❶~❸ (좌 동)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input type="checkbox"/> 한도 확대 ❶·❷ (좌 동) ❸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❶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❷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비과세 대상)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

(4)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소득법 §59의4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59의4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 (교육비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소득요건 폐지 ○ (좌 동)

<개정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p> <p>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p> <p>※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p> <p>-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p> <p>*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 한도</p> <p>○ 연간 월세액 1,000만원</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p> <p>① (좌 동)</p> <p>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p> <p>(i)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p> <p>*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p> <p>(ii)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자일 것</p> <p>*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p> <p><input type="checkbox"/>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p> <p>○ ① + ②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p>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대상주택</p> <p>○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p> <p>*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p>	<p><input type="checkbox"/> 대상주택 범위 확대</p> <p>①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p> <p>② ① 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p> <p>*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p>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면제대상) ① 또는 ② ①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② ①외의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 (적용기한) '25.12.31. ※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이하))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적용기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 (좌 동)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8)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14.12.31.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 민자(BTO) 기숙사,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 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 ○ '15.1.1.~'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20.1.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input type="checkbox"/> 체결기한 연장 ○ (좌 동) ○ '25.12.31. → '28.12.31.

<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적용기한) '25.12.31. <p>□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28.12.31. <p>□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28.12.31.
---	--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 (좌 동) ○ 4% → 3%로 인하

<p><input type="checkbox"/>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연금수령시 세액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장기수령시 감면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	---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 65세 이상 노인 ○ (납입한도) 5천만원 ○ (적용기한) '25.12.31. 	<p><input type="checkbox"/>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 (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 ○ (한도) 연 60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연 3천만원

<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조특법 §66·§6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소재지* 거주 농민 * 농지 소재 시·군·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처분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 (좌 동) ○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 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조특법 §88의5·§89의3, 조특령 §82의5·§83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 (대상자)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 ○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 (감면한도)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input type="checkbox"/>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 (좌 동)

○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①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②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어·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농·어·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조특법 §91의24)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형 ISA - 청년도약계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추가> ○ (기준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직전연도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input type="checkbox"/> 특례 적용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 (좌 동)

<개정이유>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가입 시 편의 제고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 자산 형성 지원

(16)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①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05①·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추징)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 가산세(10%) -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추징사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적용대상)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p>○ (적용기한) '25.12.31.</p>	<p>○ (좌 동)</p> <p>○ '28.12.31.</p>
--	------------------------------------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손금산입 한도) ①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②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li style="padding-left: 20px;">* 일반유희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p>○ (적용기한) '25.12.31.</p>	<p><input type="checkbox"/> 특례대상·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① (좌 동) 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li style="padding-left: 20px;">* 일반유희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p>○ '28.12.31.</p>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퇴직소득 과세 ① 천재·지변 ② 해외이주 ③ 3월 이상 입원·요양 ④ 중기중앙회 해산 ⑤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 <li style="padding-left: 20px;">- (경영악화 요건)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p><input type="checkbox"/> 경영악화 요건 완화</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left: 20px;"> <p>○ (좌 동)</p> </div> <p style="margin-left: 20px;">- 50% → 20%</p>

<개정이유>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이유>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의10, 조특령 §99의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②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기 : (i) 또는 (ii) 충족 (i) 1개월 이상 사업 (ii) 3개월 이상 근무 <li style="padding-left: 40px;"><추 가> ③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신청기한) '28.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25.12.31.이전 폐업 및 '28.12.31.까지 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기요건 추가 <li style="padding-left: 40px;">(i)·(ii) (좌 동) (iii)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근로자 제외) ③ 5천만원 → 8천만원 ○ '29.12.31.

<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천만원 → 1억 4백만원 ○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 ○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액 <신 설>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중고차: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 '28.12.31.

<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법인법 §24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 50% ○ (일반기부금) (소득금액-특례기부금) × 10%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 (좌 등) ○ (좌 등) - 20% → 30%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 '28.12.31.
---	-------------------------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의5, 조특령 §25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9)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의3)

현 행	개 정 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①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②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③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④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input type="checkbox"/>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적용배제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input type="checkbox"/>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예외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제외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①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관세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원칙) 필요 최소한의 범위 조사 의무, 다른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조사 금지 대상*) 조사받은 해당 사안 * (예외) 탈루 혐의 명백,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등의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 일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포함된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 * (좌 등)
---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관세법 §114①, ③·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p>□ 관세조사 사전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제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및 조사통지·변경통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 20일(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 (좌 등) ○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조사 대상 및 조사 사유 통지 ○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42의2①)

현 행	개 정 안
<p>□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VA*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p>□ 감면 사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 (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의4·§47의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 가산세(①+②) ①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input type="checkbox"/>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②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주류면허령 §3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검정의무자)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추 가>	<input type="checkbox"/>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 (신고의무자)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
<input type="checkbox"/>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미검정 용기 등 사용	<input type="checkbox"/> 부과 사유 조정 ○ 미신고 용기 사용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검정완료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7)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좌 동) ○ 고충민원* 신청인 *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 (원칙) 등기우편 ○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①~③의 납부고지서 ①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③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 (좌 동) ○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 50만원 → 100만원 - ①~④의 납부고지서 ①~③ (좌 동) ④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확대)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기준세액 상향)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 '26.1.1. 이후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시행시기 - '27.1.1. 이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②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의5·부칙)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6.1.1. ~ '27.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7.1.1. ~ '28.12.31.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II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 표</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0~2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2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3,0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body> </table>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 표</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0~2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2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3,000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r> </tbody> </table> ○ (좌 동)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과 표	세 율	과 표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이하
	200~3,000억원	21%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증권거래세 세율 ○ 기본세율: 0.35% ○ 탄력세율 ① (코스피) 0%(농특세 0.15%) ② (코스닥·K-OTC) 0.15%(농특세 없음) ③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input type="checkbox"/> 세율 조정 ○ (좌 동) ○ 탄력세율 ① 0.05%(농특세 0.15%) ② 0.20%(농특세 없음) ③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과세기준 조정 ○ (좌 동) - 10억원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분율</th> <th>보유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 <td>1%</td> <td rowspan="3">50억원</td> </tr> <tr> <td>코스닥</td> <td>2%</td> </tr> <tr> <td>코넥스</td> <td>4%</td> </tr> </tbody> </table>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5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분율</th> <th>보유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 <td rowspan="3">좌 동</td> <td rowspan="3">10억원</td> </tr> <tr> <td>코스닥</td> </tr> <tr> <td>코넥스</td> </tr> </tbody> </table>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좌 동	10억원	코스닥	코넥스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5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좌 동	10억원																	
코스닥																			
코넥스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과세표준 및 세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수익금액</td> <td>0.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수익금액 1조원 이하</td> <td>0.5%</td> </tr> <tr> <td>1조원 초과</td> <td>1.0%</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용역 가액 ○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p>	<input type="checkbox"/>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체계 합리화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적용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세율) - (좌 동) - 12 → 15%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 (요건) 국외전출자(① + ②)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 ②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추 가> ○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 (좌 동)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 (좌 동) - 국외주식등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법 §57의2①·②·§129⑤·⑥·⑦)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종합소득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좌 동) ○ 퇴직소득금액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배당소득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좌 동)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17의2·§18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립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frac{9\%}{14\%}$ - 9%)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①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조법 §7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추가세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p> <p>*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p> </div>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① 또는 ②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①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②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조법 §7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 ○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63·§8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추 가> <input type="checkbox"/>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 (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단,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input type="checkbox"/>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 (좌 동)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내국추가세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국조법 §8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수시부과·통지·징수 ○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 가능 ○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소적용제의 특례(국조법 §7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최소적용제의 특례 ○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GloBE매출액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GloBE순소득이 1백만유로 미만 ○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5·§7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❶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❷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❶별도 계산*, ❷투시과세처리**, ❸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8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용면제 ❶ 전환기 적용면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③초과이익 요건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❷ 일반적 적용면제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7의2·§12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위탁자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 신탁재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6)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조법 §6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에서 규정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수정신고 등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 (좌 동)
---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관세법 §19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요건(① & ②)</p> <p style="margin-left: 20px;">*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구매자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자</p> <p>①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등 금액 수령</p> <p>②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 제공</p>	<p><input type="checkbox"/>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성립 요건 축소</p> <p>① (좌 동)</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관세령 §71의2~7·§71의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우회덤핑 과세 유형</p> <p>① 공급국 안 경미한 변경</p> <p style="text-align: right;"><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우회덤핑 과세 유형 확대</p> <p>① 경미한 변경(장소 제한 없음*)</p> <p style="margin-left: 20px;">* 공급국 + 제3국 + 국내 보세구역</p> <p>② 제3국에서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p>

<개정이유>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및 국내산업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4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공제율(%)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 7	10 → 12		
신성장·원천기술	3	6 → 8	12 → 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20	20	30	1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 ②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7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input type="checkbox"/>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input type="checkbox"/>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가입요건) 19~34세,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추 가>	<input type="checkbox"/> 납부의무자 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좌 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의 배우자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미제출·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10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공매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input type="checkbox"/>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input type="checkbox"/> 금전의 배분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행 가능 업무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매각

<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115, 국징령 §105의2)

현 행	개 정 안
<p>□ 고액·상습체납자 감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 * 1.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2.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3.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 감치 면제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다만, ①~④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 = ㉑ / (㉒ + ㉑) [㉑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말 당시 체납액 ㉒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 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체납액 중 납부한 금액] ②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③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개정이유> 체납 징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 §21·§47의4·§47의5)

현 행	개 정 안
<p>□ 납부지연 가산세(①+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연 이자 상당액*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①+②+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③ 독촉장 송달비용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I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❶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input type="checkbox"/> 배당가산율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11%
❷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 (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 ○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제도 도입 ○ 사업소득세액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득법 §162의2①·162의3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가맹점의 발급의무 ○ (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운용 등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 (원칙)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합산발급 대상 추가 ○ (좌 동) ○ 대상 및 방법 확대 -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input type="checkbox"/> 합산발급 예외 허용 ○ (좌 동) ○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174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주식 거래내역 제출 ○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제출주기) 분기별*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은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①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input type="checkbox"/> 제출 자료 추가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③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국외주식 거래내역
--	---

<개정이유>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분부터 적용

(5)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89·§163)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자산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령」 §72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6)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계산방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전) ①전체 산출세액* - ②기지급 산출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 - (개정후) ①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 + 정산전까지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 (이유)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환급 ○ (적용시기) '26.1.1 ○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개정후 방식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세액 정산 ○ (정산방법)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무자에게 제출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청요건 완화 ○ (좌 동) -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 포함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 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별표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 가>	<input type="checkbox"/> 자료집중기관 추가 ○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6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병대가의 범위 ○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 합병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input type="checkbox"/> 범위 명확화 ○ (좌 동)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10) 연결납세 제도 보완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의2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항목 추가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정이유>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76의9·§76의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 ○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산입 <단서 신설> ○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 (좌 동) ○ (좌 동)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 (좌 동)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개정이유>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3③·§76의14②·§113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 (합병 전에도 보유하고 있던 자산)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좌 동)

<p><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이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p> <p>*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만 해당</p> <p>○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p>	<p><input type="checkbox"/>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p> <p>○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p>
--	---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등 공제 명확화

④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120의1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p> <p>○ (연결법인 전체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모법인 제외) 비영리내국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p>	<p><input type="checkbox"/> 적용제외 법인 추가</p> <p>○ (좌 동)</p> <p>-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p> <p>*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p> <p>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p> <p>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p> <p>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p> <p>○ (좌 동)</p>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이 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p> <p>○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p>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p> <p>○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p> <p>○ (좌 동)</p> <p>○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p> <p>*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p>

<개정이유>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일반기부금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 대상 확대 ○ (좌 동) ○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개정이유> 갱생보호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3)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①, 소득령 §4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서 신설> ○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input type="checkbox"/> 조건부·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 상품 등을 조건부·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1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7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변경 ○ 총평균법

<개정이유> 가상자산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율) 소재지·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법인 세·소득세의 5~30% 감면 ○ (한도) 1억원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16)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3단계 구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기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제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일 이내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3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1~6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15%</td> </tr> </tbody> </table> ○ (적용기한) '25.12.31.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개정이유> 중소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17)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조특령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적용대상) ① 직접출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피출자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㉔ 간접출자*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공무원연금공단, 신보, 기보, 중기중앙회 등)	피출자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㉕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피출자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출자방식) 설립 시 자본금 납입, 7년 내 유상 증자·잉여금 자본전입·채무 자본전환 ○ (적용기한) '25.12.31.	

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피출자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조특법 §13의3·§13의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①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②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 인수: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정비 ○ ① 출자적용기한 종료 ② 인수'2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 기업 ○ (내용)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요건) 직·간접 출자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	--

<개정이유> 소부장 관련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19)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율) 14% ○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적용기한) '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증대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요건) ❶&❷ 또는 ❷&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❷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❸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적용기한) '25.12.31. 	} ○ (좌 동) ○ '28.12.31.
---	---------------------------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개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 (손금한도)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대상)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25)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91의18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능 상품 ○ 예금·적금·예탁금 ○ 파생결합증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집합투자증권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 (좌 동)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 제외

<개정이유> ISA 지원대상 명확화

(26)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요건*) ① & ②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① 19~34세 ②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 주식 등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통산,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청년미래적금(하반기 중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2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 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30% /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20% / 50%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2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신 설> ○ (감면율) 5년 100%, 2년 50%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input type="checkbox"/>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 (좌 동) ○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 (좌 동) ○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04의2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 ○ (공제액)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0.3% ○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❶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❷ 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등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3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적용시장)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28.12.31.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세액공제 ○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 (요건) ① 5천원 미만 거래, ② 전화망을 통한 발급 ○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원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영세 소상공인 지원

(33)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환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중 압류금지 기준 금액 ○ 185만원 이하 금액	<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상향 ○ 185만원 → 250만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3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하는 교육비 ○ 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추 가>	<input type="checkbox"/>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양도·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input type="checkbox"/>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시일 <input type="checkbox"/>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적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면적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기: 기존 토지 취득시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상증법 §44, 상증령 §26·§3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시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input type="checkbox"/> 경매, 파산선고, 공매, 대가 수수가 명백한 경우, 거래소 주식거래* 등	<input type="checkbox"/> 제외 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증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추 가> □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증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증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 당일 증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바스켓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 제외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증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바스켓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	---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의5)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주주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의 거래대상) 특정법인 ○ (수증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증여분 과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적용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12 등)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신탁재산의 위탁자 ○ (예외) 다음의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위탁자* * 조합원 금전 매입주택에 한정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추 가>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종부법 §17⑤, 종부령 §1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종부세 합산배제 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정되는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추 가> 	<input type="checkbox"/> 추정대상 주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예정주택으로서 3년 * 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 * 합산배제 적용기간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 (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 '28.12.31.

<개정이유>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9)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 (내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10)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 (요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 면적 이내 농지 등*을 증여 * 농지·염전, 초지, 산림지,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 ○ (내용)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자경농민 영농 승계 지원

(11)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을 협의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및 지원내용)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구 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건물			
	40% 감면	25% 감면	40% 감면			25% 감면
취득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양도일부터 20년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 (좌 동)
거주지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건물 소재지 거주		
○ (적용기한) '25.12.31.			○ '28.12.31.

<개정이유>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

(1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건) ① & ② ①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 (내용) 5년 거치 5년 법인분할 익금산입개인분할납부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1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 보유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농어촌주택등) ①기회발전특구, ②수도권·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닌 읍·면 또는 ③인구 20만 이하 시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 단,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결한 읍·면 또는 같거나 연결한 동에 있지 않을 것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결한 읍·면·동이 아닐 것 ○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예식장업 ○ 부동산중개업 ○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좌 동)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111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28.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3)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4)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대상)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5)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농민·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28.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지원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리터당 56원 감면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연안화물선 유류비 부담 완화

(9)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개소법 §20의3③, 개소령 §34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공제·환급 사유 ❶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❷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제·환급 사유 합리화 ○ 공제·환급 사유 확대 ❶ (좌 동) ❷ (좌 동) -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 (제조장 등 미반입·폐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세액 초과 신고·납부시 ④ 면세담배, 원료용 담배 ○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환급사유 ②의 경우) 환입확인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장 등 반입시) (좌 동) - (미반입 폐기시) 폐기승인서
---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주류면허법 §13)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 취득, 면허요건 갖 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 면허 취득 결격사유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②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③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④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⑤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①~④ 해당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①~⑤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예외) 6개월 이내 해당 임원·지배인 교체시 면허 유지</p>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1)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가 재료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 나트륨·카복시 메틸셀룰로스칼슘

<개정이유> 주류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교육세법 §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류에 대한 교육세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 (과세표준) 주세액 ○ (세율) - (원칙) 10% - (예외)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input type="checkbox"/>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주세율 70% 초과 주류*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개정이유>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추 가>	<input type="checkbox"/> 발급 대상 추가 ○ (좌 동) ○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 조세목적상 거주자·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국조법 §67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대상조세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조세와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및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input type="checkbox"/>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
<input type="checkbox"/> 배분대상 대상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 ②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소득법 §57의2②·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제한도금액) $A \times B /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C: 종합소득금액 ○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input type="checkbox"/> 공제 적용 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p style="margin-left: 20px;">} <삭 제></p>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15②·§57의2①·②·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익금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 익금으로 보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신고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제한도금액) $A \times B /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산출세액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p style="margin-left: 40px;">*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과세표준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② <p style="margin-left: 40px;">*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②가 반영되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법 §156의6, 소득령 §207의8⑧, 법인법 §98의6, 법인령 §138의7⑧)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기간)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
-------	--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input type="checkbox"/> 국내 자산·사업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보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당첨금품, 상금, 포상금 등 <input type="checkbox"/>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	<input type="checkbox"/> 증여의 범위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input type="checkbox"/>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①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 ②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추 가>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 상당액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7)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령 §111⑧)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input type="checkbox"/>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채등: 한국예탁결제원 <input type="checkbox"/>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예탁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p>- 다만, 예탁자인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해당 내국법인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p>

<개정이유> 국채등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input type="checkbox"/> 원칙 : ❶ 신청·승인시 : ❷ 또는 ❸ ❶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❷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input type="checkbox"/>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p>㉓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 품목별 세율</p>	<p>○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p>
--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 §235의2, 관세령 §243의2)

현 행	개 정 안
<p><신 설>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유치, 담보제공 등 절차 간소화·생략 가능 ○ (적용권리)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 (적용물품) 탁송품 또는 우편물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p>	<p><신 설>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 (침해의심통보)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원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시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p>

<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출입·환적 등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관세법 §254의2③)

현 행	개 정 안
<p>□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 통관목록, 수입신고서상 수신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경우 ○ (탁송품 운송업자) 배송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 「우편법」에 따라 수취인이 배송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제외 <신 설></p>	<p>□ 실제 배송지 제출자 확대 ○ (좌 동) <삭 제> ○ (실제 배송한 자*) 실제 배송지 세관에 제출 가능 *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p>

<개정이유> 특송화물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관세법 §264의10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의 불법·유해 물품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 법정 조건·성분·표시·품질 등 위반한 물품 정보 ○ 위반 물품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 ○ (좌 동) ○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

(관세법 §265②·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관공무원의 물품 등에 대한 검사 ○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 가능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관계 장부·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신설 ○ (좌 동) ○ 마약류, 무기류, 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개정이유> 유해물품 단속 규정 명확화

(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12·§1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증명서* 발급 절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자율발급 절차 신설 ○ (좌 동)

→ 세관장 심사 후 발급 <신 설>	○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 지정 신청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년 - (발급방법) 증명서를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입력
------------------------	---

<개정이유> 수출기업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 (대상) 해저광물 탐사·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 ○ (특례)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수정신고 요건) ①&② ①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②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 (기한후신고 요건) ①&② ①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②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요건 명확화 ○ (좌 동) ① (좌 동) ②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 (좌 동) ① (좌 동) ②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의19)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 (지연통지) 신청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등을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신청 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대상 고지세액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4)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농업 등</td> <td style="width: 33%;">제조업 등</td> <td style="width: 33%;">부동산임대업 등</td> </tr> <tr> <td>6억원</td> <td>3억원</td> <td>1.5억원</td> </tr> </table>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p><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기준 삭제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5)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 §11의2, 국징령 §8의2)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 (확인범위) ① ~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②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③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④ ①-③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성실 응답 의무) 체납자는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 ○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공개 제외 대상 ①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비율) B/(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②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③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 요건 완화 ① (좌 동)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②-④ (좌 동)

<개정이유> 국세 징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강제징수비 ○ (요건) 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②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등 ○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자 등의 재기 지원

■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① 현행 제도

- (R&D 세액공제)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 R&D 세액공제 공제율(단위: %) >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1)	국가전략기술1)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	40~50
중견기업	8~20 ²⁾	40	20~30, 25~35 ³⁾	30~40, 35~45 ⁴⁾
대기업	최대 2 ⁵⁾	25	20~30	30~4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35%, (4년~)20~30%, 4) (~3년)35~45%, (4년~)30~40%
 5) 최대 2%[(R&D 지출액 / 매출액) × 0.5]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단위: %) >

구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10	+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20	20	30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1) 국가전략기술 : 8개 분야*, 71개 기술, 58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운송수단, ⑦바이오의약품, ⑧인공지능
 2) 신성장·원천기술 : 14개 분야*, 273개 기술, 186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부·장,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② 추진 배경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포함('25.3월 조특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재

③ 개정 내용

- (세부기술 신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주요 AI 기술들을 5개 카테고리로 정리하여 선정

세부기술	기술 설명
생성형 AI 기술	텍스트,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 기술	기계장치와 연동하여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학습 알고리즘(메타러닝, 강화학습 등)을 활용하여 AI 성능 향상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 기술	인간이 AI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화시설 신설) 해당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AI 인프라 조성 전폭 지원

④ 적용 시점

- '25.3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대상콘텐츠) 정보통신망에 공개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 ‘28년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 (공제율) 10%(중소기업 15%)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개정 취지)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②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분부터 적용

(3)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현행 제도

-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을 더한 값
 - * 국내 제작비 비중 8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적용
 - (기본공제율) 10%(대기업 5%, 중소기업 15%)
 - (추가공제율) 10%(중소기업 15%)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기본공제율을 추가공제율과 일치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기본공제율) 10%(중소기업 15%)
 - (추가공제율) 10%(중소기업 15%)
- (개정 취지)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③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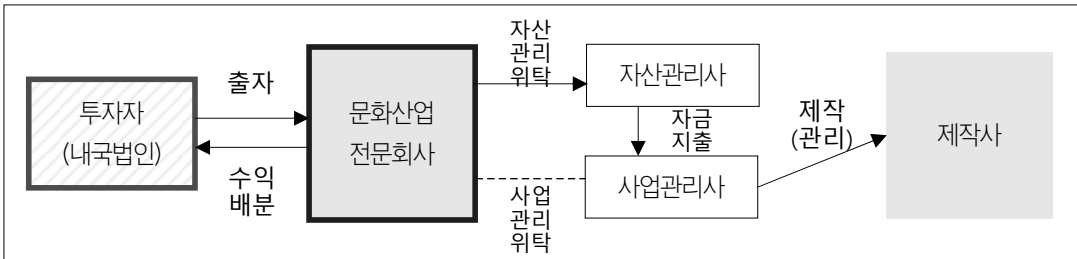
(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현행 제도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현황

- (개요) 문화산업 프로젝트만을 수행하고,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특수목적회사



- (현황) 영상콘텐츠(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전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약 78%*

* (전체) 누적 818개사, 운영중 336개사 (영상콘텐츠) 누적 637개사, 운영중 263개사

③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8.12.31.까지 연장
- (개정 취지)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투자 유인 확대

(5)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① 추진 배경

-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운송(미래형 선박 등) 분야가 포함('25.3월 조특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재

- 미래 자율주행 기술력 확충 등 생태계 강화 지원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등 확대

② 적용 시점

- (미래형 선박) '25.3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 (자동차 자율주행) '25.3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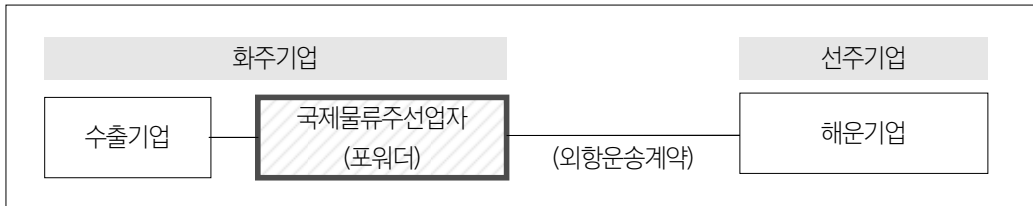
③ AI 지능형 자율운항(미래형 선박)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 미래형 선박의 '인공지능 자율운항' 기술은 ①자율운항, ②기관 자율화 및 ③사이버 보안 등을 포괄
 - ※ ① (자율운항) 항로 최적화, 항해 상황인식, 원격 운용 등
 - ② (기관 자율화) 선내 통합 제어시스템, 고장 진단, 원격 지원 및 예측
 - ③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접근 차단, 암호화 및 사용자 인증 등

(6)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① 현행 제도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공제요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비중이 전체 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해당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액의 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공제율 조정) 물류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지원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원양노선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강화
 - 전체 운송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하향(1% → 0.5%)하되, 원양노선에 대한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 1% 신설

<개정 전/후 공제율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해상운송비용의 1% (+증가분의 3%) 일률적으로 공제	(연근해 노선) 운송비용의 0.5%
	(원양 노선) 운송비용의 0.5% + 추가 1%* * 전체 원양해상 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

- (공제요건 합리화) 운송 실적 기준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물동량” 기준으로 변경해, 화주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 * 운송비용은 변동성이 높은 운임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또한, 이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중이 높아 추가적인 증가 여력이 크지 않은 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이용비중의 전년대비 증가요건” 폐지

(7)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현행 제도

- (공제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에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공제액) 기업규모·소재지·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

① 기본공제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② 추가공제(1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 (공제기간 및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지원 중단 및 공제받은 금액 전액 추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사후관리 방식 전환 및 공제액 구조 재설계 등
- ①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 기간으로 전환
 - ② 사후관리 방식을 최초 공제후 1~2년간 고용 유지시 2·3차년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후속공제 방식으로 전환
 - ③ 공제 기간중 고용이 일부 감소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중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 유지
 - ④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그 외 상시근로자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⑤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해서만 공제 적용

- (개정 취지) 사후관리 방식 전환으로 납세협력비용이 경감되고,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전환 및 점증 형태의 공제액 구조를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유인을 강화
 - 현행 사후관리 방식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정세액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 납세자 입장에서 사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 * 공제기간 중 고용 일부 감소시 잔여 공제기간 동안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배제 → 기업 입장에서는 과세연도 종료시마다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보다 최종적인 고용 증가 유지분만을 반영하여 사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
 - 기업의 장기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
 - * (현행)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개정) 실제 근로 기간 1년 이상

③ 적용 시점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2.31. 이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 중소기업(비수도권)의 경우
 - (현행) 3년간 총 22,150만원 세액공제

	Y0(기준연도)	Y1	Y2	Y3
전체 상시근로자*	3	8 (+5)	8 (-)	10 (+2)
우대(청년등)	2	5 (+3)	5 (-)	6 (+1)
기타(청년등외)	1	3 (+2)	3 (-)	4 (+1)
공제세액(만원)	-	6,550	6,550	9,050
1차년도	-	(우대) 3×1,550 (기타) 2×950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없음)	(우대) 1×1,550 (기타) 1×950
2차년도	-	-	(우대) 3×1,550 (기타) 2×950	(전년도(Y2) 1차년도 공제 없음)
3차년도	-	-	-	(우대) 3×1,550 (기타) 2×950

* 1년 이상 근로계약시 고용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 (개정) 3년간 총 22,800만원 세액공제

	Y0(기준연도)	Y1	Y2	Y3
전체 상시근로자*	3	8 (+5)	8 (-)	10 (+2)
우대(청년등)	2	5 (+3)	5 (-)	6 (+1)
기타(청년등외)	1	3 (+2)	3 (-)	4 (+1)
공제세액(만원)	-	4,400	8,100	10,300
1차년도	-	(우대) 3×1,000 (기타) 2×700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없음)	(우대) 1×1,000 (기타) 1×700
2차년도	-	-	(우대) 3×1,900 (기타) 2×1,200	(전년도(Y2) 1차년도 공제 없음)
3차년도	-	-	-	(우대) 3×2,000 (기타) 2×1,300

* 실제 근로 기간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⑤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예시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경우

	Y0(기준연도)	Y1	Y2	Y3
전체 상시근로자	3	10 (+7→+2)	13 (+3→+0)	21 (+8→+3)
우대(청년등)	2	6 (+4→+2)	7 (+1→+0)	9 (+2→+2)
기타(청년등외)	1	4 (+3→+0)	6 (+2→+0)	12 (+6→+1)
공제세액(만원)	-	1,000	1,800	3,100
1차년도	-	(우대) 2×500 -	(전체 상시 증가 ≤ 5)	(우대) 2×500 (기타) 1×300
2차년도	-	-	(우대) 2×900 -	(전년도(Y2) 1차년도 공제 없음)
3차년도	-	-	-	(우대) 2×900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공제액을 기타(청년등외상시근로자)에서 먼저 차감 후 우대(청년등상시근로자)에서 차감(표에서 굵은 글씨)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① 현행 제도

-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 폐쇄·축소후 국내 복귀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 * 7년간 100%, 3년간 50%(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2년간 50%)
- 완전복귀와 달리 부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복귀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국내로 복귀한 후, 사후적으로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하는 경우도 세액감면

	先구조조정-後복귀	先복귀-後구조조정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0	0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	0	X → 0

- 4년 내에 축소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 (개정 취지) 기업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턴형태에 대해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③ 적용 시점

- (소득·법인세)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
 -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 및 경제 선순환 제고
- (개정 내용)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 (고배당기업)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①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 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 제외
 - (대상) 고배당기업 주식 소유 거주자
 - (특례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② 시행 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하여 지급
 - 따라서, 시행 첫 해에는 '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 판정

③ 적용 사례

- (가정) A기업이 '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26.8월에 중간배당(①), '27.4월에 결산배당(②) 시행
 - A기업의 '26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
- (특례 적용)
 - A기업 주주는 '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7.5월)를 통해 '26년 소득인 중간배당(①)에 대해 특례 적용 가능
 - '27년 소득인 '26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②)은 '2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8.5월) 시 특례 적용 가능

④ 납세 절차

-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종결
-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함께 신고할 필요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① 현행 제도

-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한 경우 20% 추가 과세
 - ㉠, ㉡ 방식 중 선택 허용
 - ㉠ [기업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 당기소득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등) + 배당
기업 소득 비율	투자포함형(㉠)	60~80%*	65~85%
	투자제외형(㉡)	10~20%**	20~40%

* 대통령령에서 70%로 규정 / ** 대통령령에서 15%로 규정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③ 배당을 환류대상에 포함한 이유

-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극복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
 - 배당 증가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선순환 기대

(3)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① 개정 취지

- (현황) 국제결제은행(BIS*)은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
 - * '25.4월 기준 63개국 중앙은행 회원 가입
- BIS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안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 * (법인법 §93의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채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개정 취지) BIS는 원화표시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통안채 이외에 예금·RP·파생상품 등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요청
 - * 미국·일본 등 다수국은 BIS에 대해 협정·별도법령·면세조항 등에 따라 투자소득 면세 적용 중

② 기대 효과

- 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통한 ①국내 금융기관의 영업기회 확대, ②외환시장 참여자 다변화, ③시장 유동성 제고 등 기대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현행 제도)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개정 내용) 대체취득 대상에 유가증권(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을 추가하고, 대체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다만,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 * 토지등 매각 → 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 → 유가증권 대체취득
- (개정 취지) 대학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대체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② 과세이연을 통한 대학의 조세회피 가능성 우려

-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도는 원칙적으로 교육부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은 낮음
 - 참고로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법인세법상으로도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할 예정
 - 과세이연 후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지 않거나, 「사립학교법」 위반 시 그동안 과세이연 받은 세금을 즉시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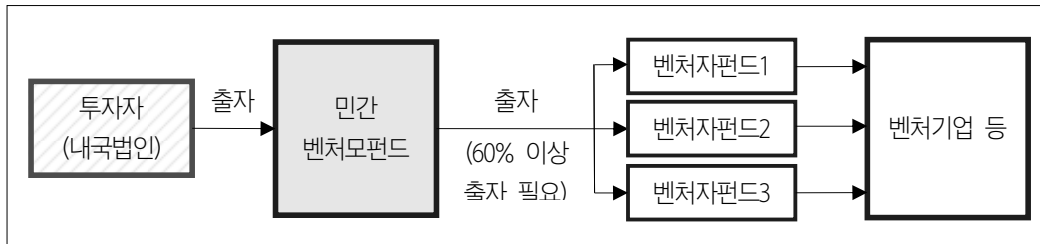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① 개정 내용

- (현행 제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일반공제)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금액*의 5%
 - * 벤처기업 등 주식 취득가액과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중 큰 금액
 - (추가공제) 벤처기업 등 출자 증가분의 3%
- (개정 내용) 추가공제 공제율을 3→5%로 상향
 - ※ 일반공제 공제율(출자금액의 5%)은 현행 유지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② 민간 벤처모펀드의 구조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 펀드
 - 조성액의 60% 이상은 벤처자펀드에 출자 필요



③ 추가 공제율을 상향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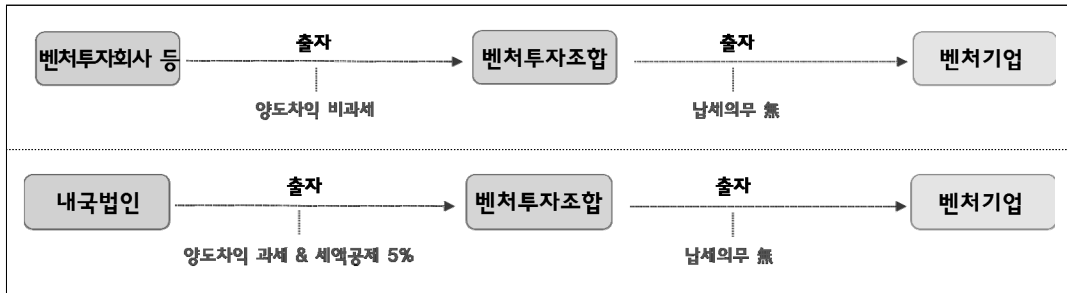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
- 일반 공제율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출자)에 대한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유지

(6)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현행 제도

-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해 출자자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또는 세액 공제를 적용 중
 - (개인 및 벤처투자회사) 양도차익(양도소득) 비과세
 - (일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시 세부담>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내용 및 취지)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비과세, 세액공제) 적용

* 벤처투자조합 단독으로 100% 출자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가 벤처투자 단계에 추가되더라도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함

□ (적용기한) '28.12.31.

(7) 민·관 합동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 첨단·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이나, 투자 대상 산업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추후 펀드 조성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

3. 지역성장 지원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① 현행 제도

- 거주자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 * (공제율) (~10만원)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별재난지역 30%]
 - ** (세액공제 적용 기부한도) 2,000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
 - * (현 행) (~10만원) 100/110, (~2천만원) 15%[특별재난지역 30%]
 - (개정안) (~10만원) 100/110, (~20만원) 40%[신설] (~2천만원) 15%[상동]
- (개정 취지)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③ 적용사례 (20만원 기부 시)

-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4.4만원*
 - * 10만원까지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 10만원 초과분의 44%(지방소득세 포함)
-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기부금액의 30% 한도, 6만원) 감안 시 총 20.4만원 혜택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현행 제도

-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 기업이 사업재편(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신사업 진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하여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
- (적용기한) '26.12.3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시 양도 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현재 여수 지정)
- (개정 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취지를 고려
 - 해당 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해 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지원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① 현행 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감면율은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대 12년간 감면
 - * ① 5년 100% + 2년 50% :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 5대 광역시, 중규모도시 (인구 30만 이상) 등
 - ② 7년 100% + 3년 50% : 지방 5대 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 등
 - ③ 10년 100% + 2년 50% : 그 외 낙후지역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기간 확대, 감면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28.12.31.)
 - 100% 감면기간 종료 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
 - 중규모도시* 내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10년간 100% + 5년간 50% 감면
 - *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취지)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촉진 유인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고용 확대 유도

③ 적용 시점

□ '26.1.1.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① 개정 내용

□ (개정 내용) 개인·법인이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과세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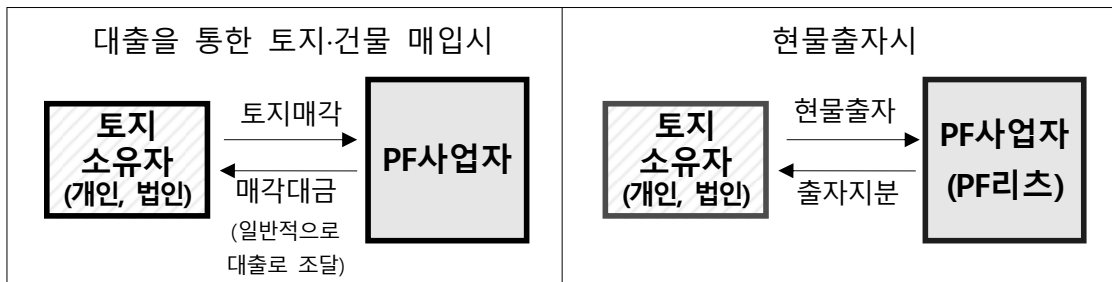
*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개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적용 기한) '28.12.31.

② 제도 신설 취지

-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지원
 - 토지 소유주 등의 세금부담 완화를 통해 PF 사업 시 대출을 통한 토지·건물 매입보다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
 - PF사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젝트 리츠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① 현행 제도

□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25.12.31.)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및 적용 기한 3년 연장(~'28.12.31.)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

		현행 (자녀수 무관)	개정안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기본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추가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좌 동)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 (개정 취지)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근로자 세부담 경감
 - * 월평균 가계지출('24.4분기) : (전체) 391만원
(1인가구) 232만원 (2인가구) 351만원 (3인가구) 506만원 (4인이상) 630만원

③ 총급여 기준에 따라 한도 상향폭을 차등한 이유

- 차등하지 않고 한도상향시 실효세율이 높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 한도 차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귀착되도록 설계

④ 적용 사례

- 부양자녀 2명,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도 상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사례

		총급여 6천만원	총급여 1억원
현 행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1,475만원
	기타 소득공제 합계*	1,300만원	1,700만원
	과세표준	3,425만원	6,825만원
	한계세율	15%	24%
개정안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1,475만원
	기타 소득공제 합계*	1,400만원(+100만원)	1,750만원(+50만원)
	과세표준	3,325만원(-100만원)	6,775만원(-50만원)
	한계세율	15%	24%
세부담 차이		△15만원	△12만원

* '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상 해당 급여구간 평균 소득공제액(근로소득공제 제외)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① 현행 제도

- 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변경
- (개정 취지) 자녀 수에 비례한 양육비 부담 완화

③ 적용 사례

-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 A*는 회사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수령
 - * 총급여 6천만원, 한계세율 15% 가정
- (현 행) 연 240만원 비과세(월 20만원 × 12개월)
 - * 나머지 연 240만원은 과세
- (개정안) 연 480만원 비과세(월 20만원 × 12개월 × 2인)
 - ⇒ 연 240만원 × 한계세율 15% = △36만원 경감

(3)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① 현행 제도

-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

구 분	주 요 대 상	한도
본인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한도 없음
장애인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300만원
초중고생 대학생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초중고생) ▶급식비·교과서대금(초중고생) ▶교복구입비(중고생, 한도 50만원)	초중고생 : 300만원 대학생 : 900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정 취지)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녀를 학원에 보냄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비용 부담 경감

* 맞벌이가구 비중(% , 통계청): ('15)44.2 ('20)45.0 ('21)45.9 ('22)46.1 ('23)48.2 ('24)48.0

③ 적용사례

- (사례 1: 월 예체능 학원비 20만원) $240\text{만원} \times 15\% = \triangle 36\text{만원}$
- (사례 2: 월 예체능 학원비 30만원) $300\text{만원(공제한도)} \times 15\% = \triangle 45\text{만원}$
 ※ 초등학교 1~2학년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 19.8만원
 ('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청)

(4)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개정 취지) 부모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 교육비를 공제 받지 못하는 현실 고려

② 적용 사례

-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times 3시간 \times 20일 \times 12개월 = 720만원
 -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 (현 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 연간 등록금 600만원 \times 15% = $\triangle 90\text{만원}$ 세액공제

(5)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① 현행 제도

□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주요내용 >

대상자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주*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7%(5,500만원 초과자 15%), 연 월세액 1천만원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고, 3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규모 상향

① (대상자)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연 1,000만원)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위치

②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국민평형 이상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적용 대상 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개정 취지) 혼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 강화

① (대상자) 최근 주말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대당 1인만 공제 가능하여 혼인 패널티로 작용

* 맞벌이 중 비동거가구(%): ('20)10.9 ('21)12.8 ('22)12.3 ('23)13.3 ('24)14.1

※ 세대주가 공제받으면 배우자 등 여타 세대원은 공제받지 못함

② (대상주택) 저출생 극복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제지원 강화

* 85㎡ 이하 주택의 경우 방 개수가 3개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적합하지 않은 점 고려

③ 적용 사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 신혼부부인 A, B는 각각 총급여 7천만원인 무주택 세대로서 직장이 달라 서울, 충청에 각

각 원룸을 구해 생활 중

- A는 서울에서 월 50만원, B는 충청에서 월 30만원 월세계약을 체결
- (현 행) 근로자 A 또는 B 중 1인만 월세 세액공제 가능
 - A: 월 50만원 × 12개월 × 15% = △90만원 세액공제
- (개정안) 근로자 A, B 모두 각자 월세 세액공제 가능
 - A: 월 50만원 × 12개월 × 수도권에 소재하는 방이 4개인 아파트(전용면적 96㎡)에서 월세(월 100만원)로 거주중
- (현 행) 월세 세액공제 불가(국민주택규모* 초과)
 - *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연 월세액 1,000만원(한도) × 15% = △150만원 세액공제

(6)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① 현행 제도

-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 * 연금저축계좌(보험·펀드·신탁) + 퇴직연금계좌(DC형, IRP 등)
- (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 수령나이에 따라 3~5%*, 사망시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 계약시 4%** 적용
 - * 연금소득(1,500만원↓)세율: (55~69세)5% (70~79세)4% (80세 이상)3%, (종신) 4%
 - ** 종신계약의 경우 4%와 연령별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 (이연퇴직소득*) 연금 수령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시 세액**에 비해 30~40% 감면(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 * 사용자부담 퇴직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 **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이연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비율만큼 원천징수)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
 -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으로 종신수령시 세율 4 → 3% 인하
 -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감면율: 40→50%)
- (개정 취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 유도 필요

(7)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① 현행 제도**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
- (개정 취지) 농어업과의 형평성, 그간의 물가상승 등 감안
 - 농어가부업소득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점진적으로 상향*한 반면, 임업 소득의 경우 '94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고려
 - * (~'93년) 500만원 → ('94년) 600만원 → ('95년) 800만원 → ('96~'08년) 1,200만원 → ('09~'11년) 1,800만원 → ('12~'15년) 2,000만원 → ('16년 이후) 3,000만원

(8)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① 현행 제도**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자경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 중
 -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한도 적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지원방식을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
 - *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
- (개정 취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양도·용도 변경하는 대신 농업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지를 출자하는 농업인이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

(9)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① 현행 제도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5년말까지 비과세('76년 이후 비과세)
 -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저율 분리과세 전환) ('26년) 5% 분리 과세 ('27년 ~) 9% 분리과세
 -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 : 14%
 - (대상자)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 (감면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2천만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서는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3년 연장(~'28.12.31.)
 - * 서민형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적용
 -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과세 ('26년 5%, '27년~ 9%)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농협·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준조합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회원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종합소득금액은 3,800만원 기준

※ (시행 시기) '26.1.1. 이후 출자 또는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 취지) 농어민·서민층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
 - 다만, 비과세 혜택의 장기 지속,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예정대로 분리과세 시행

③ 농어민 지원 축소 및 상호금융 경영여건 악화 우려

- 농어민과 임업인이 대상인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는 연장
 - 동 제도 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민형 ISA 등 여러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 점도 고려 필요
- '25.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 과세전환 시에도 저율(5-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점 고려할 필요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현행 제도

- (일반한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을 허용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추가한도) 특정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 인정
 - (문화비*) 일반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인정
 - *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박물관 입장료, 음반·영상물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 (전통시장 지출액) 일반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인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추가 손금산입 허용(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

- 전통시장 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10→20%)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개정 취지) 지역경제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① 현행 제도

- (납입단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 (공제한도) 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600만원
- (수령 단계) 소득공제 받은 불입액 및 이자에 대해 과세
 - (과세방법) 폐업·퇴임·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시 세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
 - ** 세율 15%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신고(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단, 천재지변, 해외이주, 입원·요양,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경영악화* 등 사유로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 * 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 완화(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개정 취지) 경영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① 현행 제도

- 폐업하고 3년 이내에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인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
 -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최근 폐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확대할 필요
- * 폐업자(천명): ('20) 895 ('21) 885 ('22) 867 ('23) 986
- (개정 내용)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등)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자
 - ** '18년 정리보류액 중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비중(87.3%) ≈ '24년 정리보류액 중 체납액 8천만원 이하 비중(86.3%)

③ 적용 사례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5천만원 미만의 체납이 남았으나 무재산으로 국세 납부가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가 특수고용직으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여 재기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4)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① 현행 제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를 '25.12.31.까지 취득하여 제조·가공 및 공급한 경우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
- (공제한도)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만큼 한도 적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서도 재활용 폐자원과 유사하게 공제한도를 신설
 - (공제한도)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 (이월공제)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 (개정 취지) 부당 매입세액공제 방지 등 제도 합리화

(5)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① 현행 제도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더 높게 인정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구 분	일반기업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한도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손금인정액) × 2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 → 30%로 확대
- (개정 취지) 사회적기업의 비영리성 고려하여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한 지출* 지원 확대
 -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점 감안

(6)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① 현행 제도**

- 감가상각 제도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도
- 현재 기업이 취득한 기계장치 등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내용연수 단축·연장 가능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단축 허용)
- (개정 취지) 중소기업이 자산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 처리하도록 하여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적용기한) '28.12.31.

③ 가속상각 특례 적용 예시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취득한 중소기업이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비용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기존 감가상각 (내용연수: 10년 가정)										
내용연수 25% 단축 (내용연수: 8년)										
내용연수 50% 단축 (내용연수: 5년)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① 현행 제도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당초 취득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 계산(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단,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월과세 적용 배제)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 (현행 배우자 사망한 경우와 동일)
- 이월과세는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운영 중

<조세회피 적용 사례>

'05년	❶ A, 1억에 건물 취득	
'20년	❷ A → B(A 배우자)에게 증여, 증여재산가액 6억 ↳ 증여세 부담 없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 적용	
'22년	❸ B, 6억에 건물 매도	
	〈A 생존시〉	〈A 사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이월과세 적용 O] 양도세 부담 있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1억원A 취득가액=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이월과세 적용 X] 양도세 부담 없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6억원증여재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납부 → 조세회피 가능성 없음 ▶ A 사망시 상속세과세가액에 6억원(사전증여재산*) 포함, 상속세 납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다만, 양도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사망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월과세 적용 배제
- 특히 직계존비속의 경우 증여공제규모(5천만원)가 배우자(6억원)보다 크지 않아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측면

(2)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① 현행 제도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의 0.022% 가산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납세자가 직접 일 단위 계산·납부하는 불편 완화
* 납부고지일까지는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산정·고지하므로 현행 유지
- (개정 내용)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일(日) 단위 → 월(月) 단위로 산정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현행-개정 비교 >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현행	1일당 0.022% <국세청 계산>	X	1일(日)당 0.022% <납세자 직접 계산>
개정	(상 동)	X	1월(月)당 0.67% <납세자 직접 계산>

(3)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① 현행 제도

-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세액에 대한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 허용

* 등기우편은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우편법 시행령 §6)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고 후 무(과소) 납부세액은 고지서 발송 예측이 용이하므로 일반우편 대상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행정비용 절감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일반우편 발송시 송달비용 연간 약 100억 원 절감 기대
 - '02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금액기준(50만 원)이 유지되어,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준 상향 필요
 - * 소득세·부가세 부정수 금액기준 인상(30→50만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적용
- (개정 내용) 적용대상 확대 및 금액기준 상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 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일반우편 발송 허용
 - 일반우편 발송가능 금액 기준은 5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3 세입기반 확충 및 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과세표준(억원)	현행	개정안
~ 2	9%	10%
2 ~ 200	19%	20%
200 ~ 3,000	21%	22%
3,000 ~	24%	25%

- (개정 취지)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
 - * 조세부담률(%): '20) 18.8 ('21) 20.6 ('22) 22.1 ('23) 19.0 ('24p) 17.6
 - ** 법인세수 실적(조원): ('22) 103.5 ('23) 80.4 ('24) 62.5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임

②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도 상이
 - 최근 영국·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님
 - * (英) '23년 법인세율 19 → 25% 인상
 - (佛) '25년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25년) 법인세율 인상
(기본 법인세율 25%, 매출액 10억유로 이상 +5.2%p, 30억유로 이상 +10.3%p)
- 법인세율 인상시 OECD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
 - * OECD 중 G20국가: 23.4%(지방세 포함 27.4%),
OECD 중 30-50국가(GDP 인당 3만불-5천만명): 22.5%(지방세 포함 27.2%)

(2) 증권거래세율 환원

① 현행 증권거래세율 및 최근 조정 연혁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15%	0.10%	0.08%	0.08%	0.05%	0.03%	0%
	농어촌특별세	0.15%	0.15%	0.15%	0.15%	0.15%	0.15%
코스닥	0.30%	0.25%	0.23%	0.23%	0.20%	0.18%	0.15%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재검토
 -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 (개정 내용)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0.05%p 인상)으로 환원

③ 시장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
- * '19~'24년 증권거래세율 5회 인하 후 거래대금 2회 감소, 주가지수 1회 하락
(인하 전후 6개월 평균 비교)
- 대내·외 경제 상황 등 경제 환경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① 현행 기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 · 25% 세율로 과세
- * 종목당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분율 1-4% /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시가총액	50억원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
- * 대주주 기준이 변경된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
- '17년말 대주주 기준 강화시 주가가 상승한바 있으며, '23년말 대주주 기준 완화시 주가가 하락한바 있음
-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과세형평 확보
- (개정 내용)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50 → 10억원 이상으로 조정

③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증가 등 시장 불안정은 없는지?

- 기준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

*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연도 간에도 순매수·순매도의 일관성이 없으며 기준이 강화된 '17년, '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3년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

□ 시장 수익율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현행 제도

- '81년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91년 영구세 전환)
 -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종전의 금융기관 영업세(수익금액의 1%) → 교육세(수익금액의 0.5%)로 전환하여 운영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수익금액 1조원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과표구간(수익금액)	현행	⇒	개정안
0~1조원	0.5%	⇒	0.5% (현행유지)
1조원 초과			1.0%

□ (개정 취지) '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으므로, 그 간의 금융·보험업 성장률* 등 고려

* 금융·보험업의 국내총부가가치 : ('81년) 1.8조 → ('23년) 138.5조 (75배↑)

-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약 60개)에 한정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① 현행 제도

□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수용하여 회계처리된 배당재원별로 구분

하여 과세

- (이익잉여금 배당) 이익의 분배로 보아 배당소득 과세
- (자본잉여금 배당) 통상 주주가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 주당 취득가액을 감액하고, 배당소득 비과세

□ 다만,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법인주주에 한하여 해당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중

-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은 기준에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국가도 일반적으로 과세
- 다만, 개인주주의 경우 현재 개별 취득가액 파악이 곤란하여 집행가능성을 감안,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비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개인주주의 경우도 대주주 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 (개정 취지) 집행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등*'만 우선하여 적용

*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 보유 소액주주 제외)

③ 적용사례

① (가정1) 주주1의 A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2만원

A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 (배당소득 과세여부) 비과세
 - A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1.8만원(2-0.2)으로 조정
 - 주주1이 대주주*인 경우 향후 A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2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가정2) 주주2의 B상장법인의 보유주식 평균 취득가액 0.1만원

B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주당 0.2만원

- (배당소득 과세여부) 과세

- B사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 0원(0.1-0.1)으로 조정
- 주주2가 대주주인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 0.1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향후 B주식 양도시 1주당 양도차익 0.1만원 증가하므로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2. 과세체계 합리화

(1)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

① 현행 제도 및 종료 취지

- (현행 제도)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의료기관
 - (환급 대상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의료용역
 - * (예)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 치료술 등
 - ※ (참고)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용성형 목적은 원칙적으로 과세
- (종료 취지)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제도를 종료

(2) 비과세·감면 정비 현황

- 일몰도래 72개 중 정비(종료·축소) 실적은 16개(5년간 4.6조원)로, 최근 5개년 평균 실적(13개, 5년간 0.5조원) 대비 적지 않은 수준
 - * 정비 개수(조원, 5년누적): '20년14개(0.3) '21년19개(0.1) '22년12개(0.5) '23년9개(0.1) '24년12개(1.4)
- 다만,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 지원, 투자 등 기업 활동 지원 관련으로 제도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
 -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비과세·감면은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① 현행 제도

-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 9개 항목**만 세무조정 후 저세율(9%, 12%)로 법인세 과세
 - *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총 8개
 -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3%p 인상(12→15%)하고 적용기한 연장 (~'28.12.31.)
- (개정 취지) 소규모 조합법인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비영리법 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세율 인상

③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 여력이 되는 일부 고수익 조합법인(전체 조합법인 중 11.5%)*만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음
 - * 전체 조합법인 4,107개 중 과표 20억원 초과 법인은 474개(11.5%) ('24년 신고분)
 - 과표 20억원 이하 영세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은 변동이 없고, 20억원 초과구간의 경우도 일반법인 대비 세율이 크게 낮음
- 심층평가 결과* 및 농어민을 직접 지원하는 다양한 과세특례**가 운영중인 점 고려,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이 법인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실증 증거 부족('22년 심층평가)
 - ** 농어민의 조합법인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4)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① 현행 제도 및 개정 취지**

- (현행 제도)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16년 신설)
- (개정 취지) 최근 거주자의 국외주식 보유 확대를 감안, 국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
 - * '27.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대주주 요건 없이 국외주식 과세는 과도한 것 아닌지?

- 일반적인 주식 양도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국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에도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아닌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③ 적용 사례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시가 10억원 규모(취득가 6억원)의 국외주식 보유 상태로 해외로 이민 시(영구 전출, 비거주자로 전환)
 - ⇒ 취득가와 시가의 차액(10 - 6 = 4억원)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국외전출세 과세
 - * 국외전출세액: (4억원 - 250만원 - 3억원) × 25% + 3억원 × 20% = 8,437.5만원
 - ** 국외전출 후 해당 국외주식을 실제 양도하고 외국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 국외전출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환급

(5)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① 현행 제도 및 개정 취지**

- (현행 제도) '25.1.1.부터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적용 중

* (기존) 국세청 선환급 방식 → (개정) 투자자별 펀드 소득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원천징수

**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 (개정 취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점과 인출 시점 간 장기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공제 방식* 규정

* (일반 배당소득) 펀드가 계좌에 배당소득 지급 즉시 원천징수 및 외납공제 적용
(연금계좌 소득) 펀드가 연금계좌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에 따른 원천징수 전까지 외납공제액 적립

② 시행일('26.7.1.)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 시행일은 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시스템 등 준비기간을 고려했으며,
○ 공제 방식 변경 시점('25.1.1)부터 시행일 전까지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적립할 계획

③ 적용사례

※ 간접투자소득 1,000, 국외원천세율 14% 가정

□ (적립단계) 외국납부세액 140, 외납 後 소득 860, 공제적립액 77.4*

* $140 \times \{ (9\%/14\%) - 9\% \}$

외납세액 ↳ 공제율(약55.3%)

[간접투자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인출 시]

□ (공제단계) 간접투자 소득 860을 월 215씩 4개월에 걸쳐 연금소득 수령, 연금소득세율 4%인 경우

→ 월별 원천징수세액 $8.6(\text{연금소득} \times 4\%) \times 4\text{개월} = 34.4$
215×4%

⇒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액 전액 공제
(공제적립액 잔액 $77.4 - 34.4 = 43.0$)

[간접투자 소득을 연금 외 소득(기타소득)으로 인출 시]

□ (공제단계) 간접투자 소득 860을 연금소득과 연금 외 소득(기타소득)으로 전액 인출*, 연금소득세율 4%, 기타소득세율 15% 인 경우

→ 원천징수세액: $8.6(\text{연금소득} \times 4\%) + 96.75(\text{기타소득} \times 15\%) = 105.35$
 $215 \times 4\% \qquad \qquad \qquad 645 \times 15\%$

* 연금소득 215, 연금외소득(연금소득 초과분) 645로 가정

⇨ 공제적립액(77.4) 전액 차감 후 잔여 세액($105.35 - 77.4 = 27.95$) 납부

(6)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① 내국추가세 개요 및 적용 예시

◇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부족 과세분을 우리나라에서 우선 과세*
 * 소재지국 미과세시 모기업소재국(IIR) → 타 구성기업 소재국(UTPR) 순으로 과세권 이전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구성기업

□ (내국추가세액 계산)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전체의 실효세율 계산 후,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실질 사업활동 지표인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

【적용 예시】

■ 우리나라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K의 자회사 K1, K2, K3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구분	K1기업	K2기업	K3기업	합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1,000	2,000	3,000	6,000
조정대상조세	200	0	400	600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200	300	700	1,200

내국추가세액
계산 과정

실효세율 = $\frac{1,200}{6,000} = 10\%$,
 추가세액비율 = $15\% - 10\% = 5\%$,
 내국추가세액 = $5\% \times (6,000 - 1,200) = 240$

□ (추가세액 납부) 추가세액의 그룹 내(각 기업별) 배분은 소득에 비례하여 배분함이 원칙이나, 기업의 재량도 허용

(7)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① 현행 제도

-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 신고 이후 정상가격*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경정청구 가능
 -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현행 제도는 국내에서 일방적인 과세소득 감산조정이 가능하여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 소지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서류에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를 추가*
 - * 구체적 자료(예: 상대국 수정신고서 등)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
- (개정 취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상대국에서 수정 신고하지 않는 조세 회피 방지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과세소득 감산조정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주요국 입법례를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8)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① 현행 제도

-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 *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판매자와 공모하여 저가 인보이스를 수입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연대납세의무 도입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가격정보 거짓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 성립

□ (개정 취지) 구매대행업자의 과세가격 정보 거짓 제공여부 확인 곤란

③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아닌지?

□ 미리 받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구매대행업자에게는 영향 없음

□ 또한,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싶지 않은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매대행 가능

*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 수입신고인(관세법인 등)을 연결 → 수입신고인은 통관 등을 진행하며 관세 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9)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① 현행 제도

* 관세법 제56의2조 ('23.12 신설, '25.1.1 시행)

□ 덤프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덤프물품을 공급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여 수입하는 경우 우회덤핑으로 보아 반덤핑 조치

*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형태·포장 등을 변경

○ 다만,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 곤란

② 개정 내용

□ 제3국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프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

※ 해외 주요국(미국, EU,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등)도 제3국 우회덤핑 과세 중

○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직권조사, 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신속한 반덤핑조치 가능

③ 적용 사례

□ 철강재에 부과중인 덤프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우회 덤프방지관세 부과

○ (경미한 변경) 덤프방지관세 부과중인 A국산 강판을 B국에서 컬러 도색만 한 후 한국으

로 수입

- (제3국 조립·완성) A국산 냉간압연(덤핑물품)의 원재료인 열간압연을 B국에서 냉간압연으로 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입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1)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① 현행 제도

-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음
-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회피 방지 필요
- (개정 내용)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를 추가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① 현행 제도

- '21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신고 의무 신설

*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수행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최대 1,000만원,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개정 취지) '21년 현황 신고 의무 시행 이후 다수 연락사무소가 현황명세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 확보 필요

③ 과태료 부과 기준(최대 1,000만원)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시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시행령, 법률상 최대 5,000만원) 부과 중으로 해당 기준을 고려한 것
 -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해 국내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 현재안 수준에서 우선 시행 후 실효성 여부를 추후 판단할 계획

(3)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① 현행 제도

- 체납으로 인해 발송하는 독촉장을 포함한 국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비용은 모두 일반재정으로 부담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송달비용은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 (개정 취지)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및 전자송달 신청 유도
 -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체납 당사자에게 부담
 - 송달비용이 없는 전자송달 신청을 간접적으로 유도하여 행정비용 절감하고 송달 효율 향상 도모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1일(화)	7월 2일(수)	7월 3일(목)	7월 4일(금)	7월 7일(월)
미 달 러 (USD)	1353.60	1352.60	1359.40	1358.10	1364.20
위 안 화 (CNH)	189.23	189.02	189.68	189.69	190.55
일 본 엔 (JPY)	940.65	943.01	946.82	937.43	943.95
유 로 화 (EUR)	1595.42	1596.34	1604.02	1597.06	1607.10
영 국 파 운 드 (GBP)	1858.90	1858.88	1855.72	1854.55	1862.34
캐 나 다 달 러 (CAD)	994.86	991.10	1000.48	999.85	1002.72
홍 콩 달 러 (HKD)	172.44	172.34	173.18	173.07	173.79

통 화 명	7월 8일(화)	7월 9일(수)	7월 10일(목)	7월 11일(금)	7월 14일(월)	7월 15일(화)
미 달 러 (USD)	1366.60	1368.00	1373.80	1373.00	1374.70	1378.50
위 안 화 (CNH)	190.67	190.61	191.21	191.27	191.92	192.20
일 본 엔 (JPY)	936.77	932.77	939.25	939.32	932.16	932.52
유 로 화 (EUR)	1603.91	1604.19	1610.64	1607.10	1604.07	1608.02
영 국 파 운 드 (GBP)	1861.04	1859.45	1866.86	1865.15	1853.78	1850.71
캐 나 다 달 러 (CAD)	999.78	1001.13	1003.69	1005.53	1003.72	1005.87
홍 콩 달 러 (HKD)	174.09	174.27	175.01	174.91	175.12	175.61

통 화 명	7월 16일(수)	7월 17일(목)	7월 18일(금)	7월 21일(월)	7월 22일(화)	7월 23일(수)
미 달 러 (USD)	1382.70	1387.10	1390.80	1391.90	1391.10	1386.30
위 안 화 (CNH)	192.68	193.15	193.66	193.63	193.81	193.11
일 본 엔 (JPY)	928.77	937.90	937.73	936.64	943.66	945.02
유 로 화 (EUR)	1604.49	1614.17	1615.76	1618.29	1626.82	1628.63
영 국 파 운 드 (GBP)	1850.88	1860.66	1868.19	1866.82	1876.45	1875.11
캐 나 다 달 러 (CAD)	1007.84	1013.44	1012.23	1013.91	1016.89	1019.00
홍 콩 달 러 (HKD)	176.15	176.71	177.21	177.35	177.22	176.60

통 화 명	7월 24일(목)	7월 25일(금)	7월 28일(월)	7월 29일(화)	7월 30일(수)	7월 31일(목)
미 달 러 (USD)	1379.10	1368.70	1376.00	1379.60	1391.40	1382.90
위 안 화 (CNH)	192.37	191.35	192.26	192.64	193.74	192.68
일 본 엔 (JPY)	941.94	930.96	931.21	928.96	936.88	926.10
유 로 화 (EUR)	1623.89	1608.91	1617.69	1599.58	1607.07	1579.62
영 국 파 운 드 (GBP)	1873.37	1848.91	1848.66	1843.28	1857.73	1832.69
캐 나 다 달 러 (CAD)	1013.90	1003.26	1004.60	1004.48	1010.38	999.96
홍 콩 달 러 (HKD)	175.69	174.36	175.30	175.76	177.25	176.18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